

2025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증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8.

정무위원회

목 차

I. 소관부처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II. 심사경과	1
III. 예비비 사용내역	3
IV. 검토보고 요지	5
V. 대체토론 요지	12
VI.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2
VII. 심사결과	13
VIII. 소수의견 요지	13
IX. 시정요구사항	14

2025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2026. 8.

정무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년 5월 29일
2. 회부일자 : 2026년 7월 1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제43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6. 8. 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5.)

- (상정 · 심의)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6.)
- (심의 · 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6. 8. 26.)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제43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6. 8. 24.)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5.)
- (상정 · 심의)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6.)
- (심의 · 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6. 8. 26.)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제43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6. 8. 24.)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5.)
- (상정 · 심의 · 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6. 8. 26.)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Ⅲ. 예비비 사용내역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비비는 6억 6,3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4억 7,500만원이 집행되고 6,2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추진을 위한 조직인 “검찰개혁추진단” 출범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 예비비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663	475	62	126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7억 3,0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 이는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가 2024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단체 상담수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일반 예비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	730	730	-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억 8,6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1억 8,6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소스코드, 솔루션 등의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함에 따라 정보화시스템 복구를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 것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목적 예비비	개인정보침해방지	64	64	-	-
목적 예비비	위원회 정보화 지원	122	122	-	-

IV. 검토보고 요지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검찰개혁추진단 운영¹⁾]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억 6,300만원 중 4억 7,500만원(71.6%)이 집행되고, 6,200만원(9.3%)이 이월되었으며, 1억 2,600만원(19.0%)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	-	30 △30	663	663	475	62	126	1,734

(자료: 국무조정실)

□ 2025년 10월 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날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국무조정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되었음.²⁾

1) 세부사업: 검찰개혁추진단 운영(7036-316)

2)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사·기소 기능의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³⁾
- 검찰개혁추진단에는 검찰개혁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협의회⁴⁾와 검찰개혁 업무에 관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⁵⁾를 두고 있으며, 실무조직으로 기획총괄국, 입법지원국 및 행정지원국 등을 두고 있음.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및 운영 등 검찰개혁 관련 법령 등의 제정·개정 지원
2.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및 운영 등 검찰개혁 업무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3.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이관·채용 업무 지원
4.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사와 관련 시설의 확보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5.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7. 그 밖에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3)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추진단의 업무에 관하여 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된 사람

제9조(존속기한) 추진단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1년간 존속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검찰개혁추진협의회 설치 등) ①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검찰개혁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1>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및 법제처 차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협의회는 위원장이 검찰개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차관급 공무원 또는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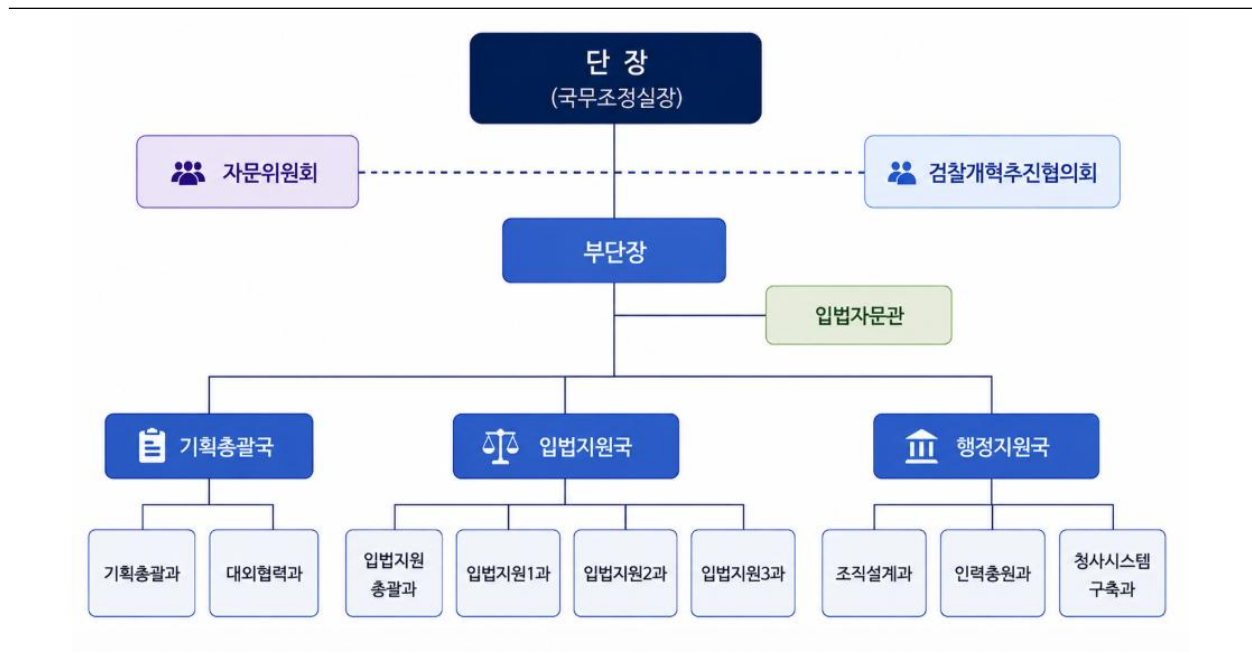
5)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에 관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추진단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자료: 국무조정실)

2) 검토의견: 예비비 불용 최소화를 위한 적정 소요액 계상 필요

- 「국가재정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⁶⁾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⁷⁾

○ 2025회계연도 개시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 및 중

6)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41.)

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후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단 (이하 “추진단”)의 설치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9억 4,000만원의 예비비 배정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6억 6,3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음.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예비비 배정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요구액	배정액	산출근거
상용임금(110-03)	58	29	3,236천 원×3명×3개월
일반수용비(210-01)	247	170	56,502천 원×3개월
공공요금및제세(210-02)	22	21	7,163천 원×3개월
특근매식비(210-05)	28	28	9천 원×51명×20일×3개월
임차료(210-07)	24	75	24,987천 원×3개월
유류비(210-08)	2	2	300천 원×2대×3월
복리후생비(210-15)	3	0	500천 원×3명×3/12
기타운영비(210-16)	4	4	((180천 원×4과)+(90천 원×5과))×3월+300천 원×3월
국내여비(220-01)	52	52	870천 원×20명×3월
사업추진비(240-01)	30	30	9,840천 원×3개월
관서업무추진비(240-02)	27	26	8,700천 원×3개월
직책수행경비(250-02)	34	34	11,200천 원×3개월
일반연구비(260-01)	90	90	90백만원×1회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백만원×1회
고용부담금(320-09)	7	3	1,113천 원×3명
공사비(420-03)	72	59	58,704천 원×1식
자산취득비(420-03)	201	0	-
합 계	940	663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이 사업은 자문위원회 구성 지연, 실무지원 인력 채용 지연 등으로 예비비의 상당 부분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였음.

- 이 사업은 예비비 6억 6,300만원 중 4억 7,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71.6%에 불과하였으며, 1억 8,800만원이 이월
또는 불용되었음.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비목	예비비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불용액	집행률 (B/A)
상용임금(110-03)	29	-	29	8	21	27.6
일반수용비(210-01)	170	△20	150	146	4	97.3
공공요금및제세(210-02)	21	△10	11	11	0	100.0
특근매식비(210-05)	28	-	28	1	27	3.6
임차료(210-07)	75	30	105	101	4	96.2
유류비(210-08)	2	-	2	0	2	0.0
복리후생비(210-15)	0	-	0	0	0	-
기타운영비(210-16)	4	-	4	4	0	100.0
국내여비(220-01)	52	-	52	2	50	3.8
사업추진비(240-01)	30	-	30	29	1	96.7
관서업무추진비(240-02)	26	-	26	26	0	100.0
직책수행경비(250-02)	34	-	34	26	8	76.5
일반연구비(260-01)	90	-	90	43	47	47.8
정책연구비(260-02)	40	-	40	18	22	45.0
고용부담금(320-09)	3	-	3	1	2	33.3
공사비(420-03)	59	-	59	58	1	98.3
합 계	663	30 △30	663	475	188	71.6

주: 일반연구비 4,300만원, 정책연구비 1,800만원 등 총 6,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됨.

(자료: 국무조정실)

- 비목별로는 국내여비 5,000만원, 특근매식비 2,700만원, 상용임금
2,100만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국내여비의 경우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업무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관련 경비의 집행이 감소하였고, 상용임금의 경우 실무지원 인력의 채용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예비비 요구 당시 연내 집행가능한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였음에도 실무지원 인력의 채용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상용임금을 3개월분 요구하였다는 점,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의 경우 2025년 집행률이 각각 3.8% 및 3.6%에 불과하였고 2026년에도 6월 말 기준 집행률이 각각 6.4% 및 2.4%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개혁추진단 소요 경비에 대한 최초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⁸⁾

- 또한, 과거에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의 예비비 불용 문제를 지적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2025년에도 예비비 요구액과 실제 집행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8) 2026년 6월 말 기준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액 17억 3,400만원 중 6억 4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3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중 국내여비는 5,700만원 중 1,000만원(6.4%), 특근매식비는 8,300만원 중 200만원(2.4%)이 각각 집행되었음.

〈국무조정실 예비비 집행부진 관련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19	◦ 국무조정실은 시급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국회 의결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추진단 구성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시정	○ 향후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 집행 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예산을 '20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음 * '19년 예비비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19.7)에 따른 추진단 신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편성	조치완료
2023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불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주의	○ 향후 면밀한 사전준비 및 검토를 통해 예측가능한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불용 등을 최소화하겠음 - '24년, '25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음	조치완료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비비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비비를 요구함으로써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없 음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없 음

V. 대체토론 요지

해당사항 없음

VI.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정부 원안대로 의결, 시정요구사항 채택.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정부 원안대로 의결.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정부 원안대로 의결.

VII. 심사결과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정부 원안대로 의결, 시정요구사항 채택.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정부 원안대로 의결.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정부 원안대로 의결.

VIII.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IX. 시정요구사항

1.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 : 총 2건

(단위: 건)

부처명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	1	-	1	-	2
합계	-	-	1	-	1	-	2

※ 부대의견 1건(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건) 첨부

2. 시정요구사항(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배정 시 적정규모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개혁추진단 운영(7036-316)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예비비 배정과 관련하여,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점에서 예측가능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나, 자문위 구성 및 실무원 채용 지연, 온라인 회의 전환 등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사유로 배정된 예비비를 불용한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불용액(1억 2,600만원): 국내여비 5,000만원, 특근매식비 2,700만원, 상용임금 2,100만원 등 이월액(6,200만원): 일반연구비 4,300만원, 정책연구비 1,800만원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신규사업을 예비비로 추진하는 경우, 재원 규모 산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로 반영하고, 예비비 집행 과정상의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연구용역 자체 조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개혁추진단 운영(7036-316)	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일반연구비 8,600만원을 집행하여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다수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검토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해당 연구용역의 발주 목적, 조사 결과의 보고·검토 및 정책 반영과정 등을 자체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3. 부대의견(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활동기한 종료 후 임시조직을 존속·연장할 경우에는 훈령 개정만으로 반복 연장되어 온 다른 임시조직의 전례를 따르지 말고 연장의 사유·기한을 명시하여 국회에 사전보고한다.